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56 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김상희・남인순・류호정

문정복 • 백혜련 • 서영교

안규백 · 양이원영 · 양정숙

윤관석 • 이규민 • 이은주

정필모 · 최혜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 대부 광고,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지자체,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'20년 기준 3만 2,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.

한편, 현행법은 성매매,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 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 니하고 다만,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나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 으며, 스미싱 등에 이용된 번호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제재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. 이에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9조의2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성매매,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,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으로써 성매매,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53호), 「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55호)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3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
- 5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
- 6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3 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3(전기통신역무 제공의	제32조의3(전기통신역무 제공의
제한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	제한) ①
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	
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	
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	
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	
해당 전기통신번호(연결되어	
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	
를 포함한다)에 대한 전기통신	
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	
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
	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
	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
	<u>의 중지 요청</u> -
<u> <신 설></u>	<u>5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9조의</u>
	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
	의 중지 요청
<u> <신 설></u>	6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	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	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

	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